

●기획재정부령 제9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분류표”를 “분류표(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그 밖에 식 용으로 제공 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 물 또는 임산 물과 단순가 공 식료품	0409	① 천연꿀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 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 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 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 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